

## **제3부   종합평가**

제 1장 선거기사심의위원의 평가

제 2장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결산좌담



## 제1장 선거기사심의위원의 평가

# 선거기사심의와 진실보도의 한계

### I. 서론

“All the News That's Fit to Print(인쇄할 가치가 있는 모든 뉴스)”

뉴욕 타임즈 1면 제호 옆에는 이와 같은 구호가 새겨져 있는데 이는 창간 1세기가 넘도록 일관되게 추구해 온 이 신문사의 보도지침으로 오늘날에도 신문제작의 교본으로 살아 있다. 또한 ‘신문편집’을 논할 때 가장 먼저 접하는 문구이기도 하다.

신문에서 ‘인쇄할 가치’란 무엇을 말하는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진실보도’를 지칭한다고 하겠다. 신문제작의 두 기둥을 ‘취재’와 ‘편집’으로 보는 바, ‘취재가 사실’이라면 ‘편집은 진실편’에 서 있다. 사실에서 벗어난 취재가 어불성설이듯, 진실을 외면한 편집 또한 존재할 수 없다.

선거뉴스도 어디까지나 사실에서 출발해 진실로 끝나야 한다. 선거가 어떻게 행하여지고 있는냐의 잣대는 언론의 자유와 함께 책임과도 연계되어 있다. 언론의 자유와 매스 미디어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아무리 선거가 자주 실시된다 한들, 그것은 다중의 의사를 흡수, 통합하는 절차가 되지 못하고 끝없이 지배하려는 권력의 손아귀에 돌아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언론의 자유가 중요하면 할수록, 그에 대한 책임 또한 막중하다. 언론의 자유는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진실보도에 충실함으로써 그 사명을 다하였을 때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언론이 제 구실을 외면하고 독선적이며 무책임한 필설로 여론의 왜곡을 부추킨다면 이미 언론이 아니다. 언론이 망가지면 필연적



권 동 순

선거기사심의위원(전 한국편집기자협회 회장)

- 중앙대학교 정치외교과 졸업
- 전 한국편집기자협회장
- 전 중앙일보 편집부장, 부국장(뉴스위크 한국판)
- 전 일본조치대학(上智大)신문학과 객원연구원
- 전 일요서울신문사 편집인, 편집국장
- 전 도서출판 범조사 대표.

으로 타율을 부른다.

## 언론자유와 언론횡포

그렇다면 오늘의 언론은 어떤가? 자율과 자정의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가? 독선과 편견의 그늘에서 벗어나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가?

지난번 언론사 세무조사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 적이 있었다. 많은 신문사가 일제히 전가의 보도처럼 ‘언론탄압’을 외치면서 저항했다. ‘언론 탄압 정권의 말로’ 등 험한 표현을 써가며 ‘누가 이기나 보자’는 식으로 정권을 압박했다. 그 와중에 재미있는(?) 제목을 하나 발견할 수 있었다.

‘합법을 가장한 언론탄압’

합법이면 그 자체로 합법이고, 아니면 불법이지 합법을 어떻게 가장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증명할 객관적이고도 확실한 증거가 어디에 있는가. 무슨 뜻인지는 알겠으나, 제목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인 ‘본문 가이드’나 ‘뉴스 밸류 측정’을 완전히 봉건, 낱말의 교묘한 조립에 어안이 병병해진 적이 있었다. 센세이셔널리즘에 빠진 우리 신문의 한계를 보는 듯 했다.

천문학적 액수의 탈세로 사주가 구속되었다면 사안의 중대성에 입각해서 차분하고 냉철하게 대처할 일이지 방방 뿔 일은 아니며 언론이 지레 단정할 일은 더욱 아니다. 탄압시비는 나중에 가려도 늦지 않다. ‘합법을 가장한 언론탄압’에 앞서 ‘언론자유를 가장한 언론횡포’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묻고 싶어진다.

## 선거브로커와 사이비 언론

일간지를 포함, 6,700개가 넘는 정기간행물

(2002년 2월 기준)의 홍수 속에 선거철만 되면 대목을 만난 듯 날뛰는 ‘하루살이’ 사이비언론의 횡포 또한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특정후보와 결탁해 거액을 받고 상대후보에 대한 흑색선전을 일삼는가 하면 상식 이하의 편파보도 대가로 향응이나 금품을 받는 등 선거분위기를 혼탁하게 만드는 것은 주로 지방신문인 경우가 많다. 박봉의 기자에게는 광고와 판매까지 강요하면서 알아서 먹고살라는 식이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장삿속 밝은 신문사주에게 신문윤리를 들먹이는 자체가 넌센스다. 일부 신문이 천동벌거숭이로 날뛰며 공명선거를 흐리게 하는 행위도 문제지만 최근엔 자금력이 빈약한 지방신문의 약점을 노려 특정후보나 선거브로커들이 신문을 악용하는 사례마저 늘어나는 추세이다. 속된 표현으로 신문을 가지고 노는 것이다.

치고 빠지기 식의 허위자료 유포, 흑색선전, 기자협박과 법적대응 남발 등. 사이비 언론문제는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와 있다.

‘개혁의 칼날에서 벗어나 있는 유일 집단’은 언론’이라는 빈정거림이 아니더라도 언론인 스스로의 자정노력은 지속적으로 이행돼야 한다. 그것만이 진정 언론자유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

## II.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좌표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공명선거를 지향하고 바로 서는 선거문화를 만든다는 취지 아래 우여곡절 끝에 통합 선거법이라는 이름으로 정기간행물의 선거기사심의기구 설치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출범했다.

그러나 시초부터 제도권 언론의 거센 역풍에

시달려야 했는데, 심의결정에 마땅한 대항수단이 없다는 점, 사법기관도 아니면서 형사처벌까지 가능토록 한 점(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 게재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4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등), 그리고 시정내용 중 가장 무겁게 인식되는 사과문 게재명령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이 이유였다(개정 선거법 제8조3은 제256조와 연계되어있다). 공정선거를 명분으로 선거기사를 심의하는 행위가 행위 ‘감 놓아라, 배 놓아라’식 제작간섭이 된다면 이는 누구도 원치 않는 일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기사가 심의를 받을 수밖에 없다면 언론 내지는 언론인의 보도관행 잘못이 크다고 봐야 할 것이다.

사실 우리 신문의 편파 왜곡보도 관행은 생각보다 뿌리가 깊고 넓다. 오죽했으면 참다못한 시민단체가 92년부터 ‘선거보도감시연대회의’ 같은 기구를 구성, 선거때마다 돋보기를 들었을까. 97년 대선과 재작년 총선은 유례가 드물 정도로 편파와 권언유착 시비로 점철된 사실은 모두가 알고있는 그대로이다.

## 언론의 선거보도관행 문제 많다

우리 언론의 선거보도관행의 병폐는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지만 그 중에 몇 가지를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경마식’, 또는 ‘기마식’ 보도다.

승패, 우열의 단순논리에 순위위주의 경마식 보도는 과열과 혼탁의 주범이다. 여기에 언론이 권력과 유착이라도 한다면 진실보도는 물론 사실보도에도 한참 벗어나는, 참담한 결과를 낳게 된다.

두번째는 ‘폭로식’ 보도인데 그 심각성은 경마

식에 못지 않다.

사실이 규명되지도 않은, 아직은 논란단계인 사안마저 인용부호(“ ”)를 면죄부인양 달고서는 ‘어찌 어찌했다’는 식의 단정적인 짧은 제목은 너무나 흔해 사례를 들 필요도 없다. 아무리 신문도 상품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해도, 그래서 독자의 시선을 잡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이해하여도 지나친 횡포다. 개구리에게 장난으로 돌을 던져도 맞는 개구리에게는 생명과 직결된다. 특정후보나 정당에 치명적일 수도 있는 ‘폭로식’은 규제 받아 마땅하다.

세번째는 갈등구조를 만드는 못된 관행이다.

여기엔 지연, 학연, 혈연 등이 마치 김장김치에 파 마늘 고추가루 버무려지듯 얹히고 설켜 고질적인 분파, 분열의 원인이 되고 있다. 최근, ‘연줄보다 실력’ 우선의 ‘히딩크식 CEO관리기법’이 화제인 모양인데 우리 선거문화에 접목하는 방법도 생각해 봄직하다.

네번째는 냉소주의 조성인데, 대표적인 선거보도의 역기능으로 작용한다.

‘10당5락’(10억을 쓰면 당선되고 5억이면 떨어진다) 따위의 제목이나 촌로 몇 명 뿐인 행한 운동장에 강아지 한 마리를 클로즈 업해 썰렁함을 강조하는 유세사진 등의 게재행위는, 기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선거문화에 악영향을 끼친다.

다섯번째, 노골적인 특정후보 봐주기는 지방신문일수록, 지방선거일수록 더 심하다.

## 지방신문은 왜 공정과 형평을 외면하는가

제3회 지방선거 보도에서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자체심의한 의결현황을 보면, 특정후보 내지는 특정정당 봐주기 혐의가 짙은 33건의 위반유

형(공정성 및 형평성) 중 지방일간지와 지방주간신문이 29건을 차지, 90%에 육박하고 있다(2002년 2월 14일 ~ 2002년 7월 13일).

결정내용인 주의, 경고도 총 46건 중 지방신문이 34건으로 절대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다.

후보등록도 하기 전에 '아무개 무투표 당선 유력' 식의 기사가 지천이고 보면 신문 볼 생각이 싹 달아난다. 이밖에도 쟁점부각 소홀, 지역 갈등 조성 등도 빼놓을 수 없다.

이번 지방선거 기사도 이와 같은 퇴행적 관행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했다. 참고로 연초 '기자 협회보'는 전국 신문방송기자 503명을 대상으로 언론사의 특정후보지지 성향에 관한 설문조사를 발표했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언론사의 특정후보 지지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87.1%가 그렇다고 대답하고 있으며 어느 언론사가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10명 중 7명 이상이 'C일보'라고 대답하고 있다.

최근 일부 전향적인 언론사나 언론노조가 자체적으로 '엄정 중립, 선거이슈개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선거보도 준칙을 만들어 선언적이 아닌 실무지침으로 실천하겠다고 한다.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결과는 지켜볼 일이다.

###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허실

이처럼 언론인 스스로가 인정하는 선거보도의 왜곡사실로 볼 때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존속명분은 극명해진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타당성과 합목적성을 갖췄는가하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우선 선거기사심의란 말 자체가 언론자유 침해라는 원초적인 논쟁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설사 선거보도에 명백한 잘못이 있다해도 외부에

서 일일이 기사를 강제한다면 역설적으로 언론도 상당부분 책임에서 비켜설 수 있다는 논리도 나올 수 있다.

언론자유 제반에 대한 시시비비는 천부의 인권론과 맞물려 매우 복잡하고 민감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쉽게 결론을 내릴 사항은 아니다. 그것보다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룰' 이랄까, 소프트웨어적인 면에 먼저 손을 댈 필요가 있다고 많이들 생각하는 것 같다.

우선, 심의기준의 핵이랄 수 있는 공정, 형평, 객관성에 대한 설정이 너무 추상적이고 형식적이어서 위법성 시비를 낳고 있다.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는 선거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다루어야 하며, 편집과 기사배열에 균형을 맞추고 쟁점사항들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한다'(총칙 1, 2, 3조)라고만 되어 있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관도 일반화, 공론화하면 객관이 되고 마는 것이 상식일진데 선언적 의미만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한계가 있을지는 몰라도 일정수준의 세부기준이 필요하다.

앞서 밝혔듯이 선거법 제256조에는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별다른 이의신청 절차가 봉쇄된 상태에서 위원회가 사법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나 다름없게 만들어 놓은 것은 위험하다.

논리의 비약이겠지만 설령 기사나 제목이 함량미달이라고 해서 외부의 강제를 감수해야한다면 서슬 퍼런 계엄령 하의 신문검열과 무엇이 다른가라는 볼멘 소리도 나올 만하다.

사과문 게재결정도 '헌법이 보호하고자하는 양심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위헌판결을 받을 가

능성이 크다. 실제 현재는 1991년 ‘사과광고의 강요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렇다고 뒤탈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심의행위가 위축되거나 유명무실해진다면 더욱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 탄력운영도 법적 근거 있어야 힘 받아

선거기간이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언론피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가능토록 한 제도적 장치인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많은 순기능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처럼 선결해야만 할 여러 과제들을 안고 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이와 같은 시비에서 벗어나려면 우선 선거기사심의 규칙이나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등의 운용의 묘를 살리는 노력이 필요하며, 일부 규칙이나 기준을 수정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일이다.

불공정보도에 대한 제재로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결정, 반론보도문의 게재결정, 그리고 주의, 경고결정이다.

그런데 사과문 게재결정은 아주 불가능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앞서 거론한대로 위헌소지가 있어 어렵고, 정정보도문 게재결정은 사실여부를 가리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효과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반론보도문 게재와 주의, 경고조치만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용의 묘를 발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선거기간 전후에 한시적으로 설치할 게 아니라 상설기구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Ⅲ. 지방선거 기사심의위원회 자체평가

제3회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구성된 때는 설 연휴가 끝난 2월 중순이었다.

먼저 회의운영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논리적으로 틀을 정하였다.

첫째, 주의, 경고결정은 법적 근거는 없지만 선거법 제8조와 위원회규칙 제12조 2항을 간접근거로 하고, 사과문 게재결정은 현재의 위헌판결을 존중하지만 사과문결정의 전면포기는 아니라는 유예적인 의미를 부여하였으며, 정정보도와 관련해서는 진실여부 규명에 만전을 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밖에는 16대 국회의원선거기사심의기준에 준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불공정언론사에 대해 주의나 경고 등의 결정을 내렸다 해도 해당 언론사가 이를 무시할 경우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게 되었다. 방송의 경우 방송법제100조에 의거, 사과방송이나 사원징계까지 가능토록 해놓고 있다.

국회에서 법규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해당언론인의 직무정지 등 강력한 처벌권한을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부여했지만 최종심의과정에서 삭제되고 말았다.

개선방안으로 한국신문협회 등에 게재를 권유한다든지 홈페이지 게재 등이 거론되었지만 역시 한계가 있었다.

심의위원장은 16대 국회의원 선거 때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한 98건 중 후보자가 직접 시정을 요구한 것은 4건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피해당사자가 언론사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하기 힘들다는 현실적인 한계를 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들이 당사자를 대신해 불

공정행위를 제보하는 등 협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의대상은 6700여 간행물(2002년 2월 기준) 중에 웬만큼 정상적으로 발행, 배포되는 414개 매체로 정했다.

## 피해자의 시정요구 당연히 늘어나야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자체심의와 후보자 등 피해자들의 시정요구에 따른 심의로 나누어 진행된 심의의결 결과를 보면, 자체심의의 경우 위반 유형 46건으로 공정성 및 형평성이 33건(71.7%), 여론조사보도요건미비 11건(23.9%), 여론조사결과 보도금지 2건(4.3%)이며 결정내용은 주의 34건(73.9%), 경고 12건(26.1%)이다.

시정요구심의 접수는 모두 10건으로 이중 정정보도 게재결정 1건, 반론보도 게재결정 1건, 주의 2건, 기각 2건, 취하 4건이다.

월드컵과 이른바 '노풍'으로 선거분위기가 극도로 침체된 가운데 구성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시정요구자의 절대다수(8명)가 진위여부를 가리는데 많은 시간과 절차를 요하는 정정보도문 게재를 원한 것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대한 기대가 컸던 탓도 있겠지만 지역 선거풍토가 그만큼 혼탁했다는 반증이기도 해, 씁쓸함을 금할 수 없었다(10개 대상매체 가운데 지방지가 9곳).

짧은 시간에 한정된 인원이 414개의 정기간행물을 다 볼 수는 물론 없다. 그래도 기자적 감각으로 제목과 기사배열만 대충 헤아려도 편파왜곡기사인지 아닌지 알 수 있었다.

특이하게 느낀 점은 같은 위원이라도 추천단체와는 상관없이 법조인과 언론인출신 위원들간에 시각차이가 작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면서 언론인 출신 위원들간에도 이견

이 없지 않았는데 결국은 공정, 형평, 객관성의 잣대를 어디에 두느냐하는 문제와 만나게 된다.

선거보도의 객관, 공정, 형평성만큼 막연하고 황당한 것도 있을까?

위원 개개인은 객관의 잣대를 들고 회의에 참석했다고 할지 몰라도 선거기사란 것이 두부모 자르듯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여론조사 보도요건 미비로 주의를 받은 자체심의 1번 N신문의 예를 보자.

경기도 도지사선거를 다룬 2월 14일자 3면 상단기사는 먼저 제목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메인 타이틀은 '한나라당 손학규 독주 태세'이고 조금 작은 활자의 부제는 '민주, 임창열 우위 속에 김영환 도전'으로 되어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이 보도는 제목에 관한 한 흠잡을 수 없다. 사실 후보등록도 안된 2월 중순의 상황은 지면 그대로 한나라당의 경우 손학규의 독주상태였고, 민주당은 재판문제가 불거지기 전의 임창열(현직)이 계속 거론되는 가운데 김영환이 조심스럽게 의사타진을 하고 있었다. 그냥 상황분석 이상도 이하도 아닌 보도다. 이것을 한나라당 내용만 크게 취급했다고 문제삼는다면 잘못이다.

본문을 대변하는 제목은 먼저 그 기사의 전후 상황을 파악한 뒤 이슈가 될만한 것을 독자의 입장을 고려해 뽑고 부제는 주제를 보완하거나 진척된 사실로 다는 것이 기본이다.

'한나라 손학규 독주'는 어떤 사안이 정리된 상황이므로 당연히 이슈=주제가 되고 민주는 누가 나올지도 모르는 혼조 상태이므로 부제목 감이다.

여기에는 레이아웃 등 지면사정도 있을 테고 회사의 편집방침도 작용한다. 선거기사의 제목 감상법은 독자로 하여금 일정수준의 사회성을

요구하는 법이다. 공자말씀 같지만 대저 제목이란 막힘 없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우면 좋은 제목이다. 문제는 신문 메카니즘을 이해 못하는데 있다.

단순히 ‘글자가 크다’, ‘작다’, ‘순서가 앞이다’, ‘뒤다’식의 산술적 잣대는 또 다른 편파, 왜곡보도의 씨앗이 될 수 있다. 굳이 고집한다면 모든 신문의 모든 선거보도는 똑같은 행수에, 똑같은 크기로 똑같은 규격에 맞춰야 하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선거보도심의의 탄력적 운영이란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고 상식선에 있다 할 것이다.

### 여론조사는 여론형성의 도구가 아니다

여론조사결과보도 금지규정이나 여론조사의보도요건(선거법 제108조,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은 비교적 분명해 심의에 큰 어려움은 없었다.

하지만 공표금지 기간이라도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한 판세분석의 경우, ‘주의’가 되기도 하고 ‘불문’이 되기도 하는 등 다소 어려움이 따랐다.

조금 다른 이야기이기는 하나 여론조사 보도는 우선 유권자가 정치적 판단과 이해를 하는데 있어 도움을 주어야 한다. 그런데 대다수의 언론사는 여론조사 자체를 무슨 여론형성의 도구로 인식하거나 흥미위주의 뉴스거리를 생산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C일보 3월 11일자 5면 ‘서울시장 선거 가상대결’ 여론조사보도를 보면 2자 대결의 경우 ‘한나라 이명박 38%, 민주 김민석 34%’, 3자 대결은 ‘이명박 29%, 김민석 26%, 홍사덕 23%’으로 답변백(?) 제목을 달았다. 선정방법, 표본오차율 등도 조목조목 밝혀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

론조사보도)의 규정에 충실한 듯 했다.

하지만 본의는 아닐지 몰라도 편파적 보도이고 부적절한 기사작성으로 보여진다. 왜냐하면 3월초는 여야모두 후보경선 단계다. 민주당의 경우 김민석은 이상수와 경합중이기도 하다.

지방선거의 하이라이트가 서울시장 선거여서가 아니고, 이제 시작 단계이고, 그래서 정말 박빙의 판세라면 ‘예측불허’, ‘정책대결 불가피’ 정도의 균형감각을 먼저 가졌어야 했다. 그런데 어떤 경우라도 한나라 이명박이 이길 수 밖에 없다는 식의 수치나열로 오해받기 딱 좋게 해 놓았다.

‘수도권 지역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선거까지 3개월이나 남은 시점에서 여론조사 수치만으로는 속단하기 아직 이르다’라는 내용도 기사 말미에 들어갔었어야 했다.

여론조사보도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공정선거 지향점과 어긋난다면 선거법이나 심의기준을 고쳐서라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 Ⅳ.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선거보도사례

기자의 쓸 권리와 후보자의 인권이 충돌하면 어떻게 될까.

D신문 4월 26일자 사회면 머리기사는 민주당 전북지사 경선에 나선 정세균 의원의 차명계좌 운용사실을 들어 비자금관리 의혹과 돈 세탁 가능성 등을 제기했다.

시정요구인은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은 후원회에서 합법적으로 모금된 것이며 정기적으로 선관위에 지출내역 및 영수증처리가 신고돼 자금흐름이 명백하며, 돈 세탁이라면 검은 돈을 다른 계좌에 여러 차례 넣었다 뺐다 하는 등의 수법으로 자금출처의 추적을 어렵게 하는 일인데 입

금인이 시정요구인임을 감안할 때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기사로 인해 경선에 불이익을 당하게 되었다며 정정보도문 게재를 요구했다.

위원회는 이 안건이 선거기사와는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언론중재위원회로 넘겨야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비자금의혹관련 기사이므로 선거보도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해 심의에 들어갔다.

시정요구인은 입금된 돈은 비자금 아닌 의정비라는 점, 출처와 사용처가 분명한 점, 실명이 채 거래내역을 공개하면서 조목조목 보도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반면 피시정요구인은 비자금의혹에 대한 제보가 있어 취재했고, 정의원측이 정황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해주지 않아 기사의 흐름상 추론해 기사를 썼고, 판이 바뀔 때 마다 사실확인예 따라 내용을 달리했음을 밝혔지만 쓸 자유가 있다면 그에 대한 책임도 함께 따른다는 사실을 잊은 듯 했다.

한마디로 말해 이 기사는 성립될 수 없는 기사다. 사실로 드러난 것은 동창명의의 차명계좌 뿐이며 나머지는 모두 '의혹', '가능성'에 불과하다. '차명계좌면 비자금, 비자금이면 구린 돈, 구린 돈이면 돈 세탁' 이런 선입관을 가지는 것은 자유지만 그것을 기사화해서는 안된다.

특종을 노렸다면 너무 성급했고 비리폭로 차원이라면 사실근거가 빈약했다. 근거가 빈약하다 보니 자연 '차명계좌는 원래 구린 법 아닌가. 수입지출내역이 맞지 않다'는 등 지엽적 문제에 매달리면서 수세에 몰리고 말았다.

선거기사취재는 사건기사 취재가 그렇듯 접근 방식이 주도면밀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른 뜻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래야만 기사 전개가 손쉬워진다. 팩트만 잘 잡으면 그 후는 '의혹'을 제기하든, '가능성'을 제기하든 어떤 추론이라도 대중은 익스큐즈가 되는 것이다. 팩트를 잘 잡는다

는 말은 첫 단추를 잘 꿰는 것과 같다.

## 사실이 아니면 쓸 수도, 써서도 안된다

'비자금 의혹'을 무리하게 합리화 하려다보니 '금융전문가들은 정의원이 자금출처가 의심스러운 돈이나 선거자금으로 쓸 돈을 세탁하는 방법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엉뚱한 금융전문가를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다.

"수사권이 없는 기자가 의심이 갈만한 제보가 있으면 써야하는 것 아니냐, 확증이 없다고 못쓰게 한다면 세상 비리를 과해치는 일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피해자의 인권 못지 않게 언론자유도 중요하다" 이런 논리는 심정적으로는 이해할 부분이 없지 않으나 사실여부를 따지는 심의의 본질을 흐리게 할 뿐이다.

이 안건은 해당언론사가 합의사항(반론문 형식으로 게재)대로 보도를 하지 않아 위원회에서 정정보도문 게재결정이 내려졌다.

피신청요구인인 D신문사는 정정보도문을 게시한 뒤 소송을 의식한 듯, 재심을 신청했지만 위원회에서 기각했다.

이 안건은 사실에 입각하지 않고서는 기사를 만들 수도 없고, 만들어서도 안 된다는 교훈을 남김과 동시에 일선기자의 취재관행에 허점이 없나 되돌아 보게 한다는 점에서 기억에 남는다.

## V. 맺는 말

월드컵과 노풍으로 일컬어지는 경선 바람 속에 이번 지방선거는 선거무용론이 거론될 정도로 침체분위기 속에 치러졌다.

50%도 안되는 투표율로는 민의가 제대로 반영

되었다고 보기 힘들며 당선자의 대표성에도 흠결을 남겼다. 20대의 투표율이 50대 이상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선관위발표를 들으면서 우리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가 다시 일어났다.

제3회 지방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자체심의 결과 46건을 의결하였는 바 이는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그것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원래 지방선거는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이슈를 폭발시키는 분사력이 약하고 지역 각개적이어서 관심도가 약하다는 점을 감안해도 그렇다.

물론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심의행위가 언론의 공정성에 대한 관심과 주의를 환기시킨 결과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시정요구는 모두 10건으로 국회의원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4건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 피해사실에 대한 능동적 대처는 바람직한 현상이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논의가 점차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공정보도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이번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특기할 사항이 있다면 회의 운영의 틀을 체계화(예를 들면 주의, 경고에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다. 하지만 보다

중대한 위반 사항인 사과, 정정이 가능하다면, 보다 경미한 사항도 규제가 필요하다. 등)했다는 점과 처음으로 재심청구제도를 도입, 결정을 내렸다는 점이다.

이번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대과 없이 소임을 마칠 수 있었던 데는 심의위원장을 비롯한 심의위원 전원이 단 한 차례도 불참하지 않고 각자의 목소리가 '선심위'라는 프리즘을 통해 공정보도로 모아지도록 힘썼기 때문이다.

앞으로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언론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다 기능적으로 보강 개선, 발전해야겠지만 언론 각 사도 때에 따라서는 가해도구도 될 수 있는 '펜'의 속성을 이해하고 선진언론의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최근 일본언론들은 보도윤리의 제고와 보도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신문사 안에 자율적인 제3자 기관을 설치하고 있다. 일본식 옴부즈맨 기구 격인 이들 기관은 마이니치신문의 '열린 신문 위원회'를 시작으로 통신사를 포함해 20여개사에 달하고 있다.

선거기사로 범위를 좁혀 생각하면 늘상 불공정, 편파시비에 시달리는 우리에게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

## 제2장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결산좌담

###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운영평가

일 시 : 2002년 7월 12일 오후 4시

장 소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회의실

#### 참석자(선거기사심의위원)

- 양 삼 승 (梁三承, 심의위원장, 사회)
- 박 기 순 (朴琪淳, 부위원장)
- 김 해 도 (金海都, 전 언론중재위원회 부위원장)
- 임 춘 웅 (林春雄, 전 서울신문 이사)
- 이 경 일 (李耕一, 전 한국언론재단 이사)
- 이 동 화 (李東和, 경기대 대우교수)
- 정 동 익 (鄭東益,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
- 전 민 기 (全民基, 변호사)
- 권 동 순 (權東純, 전 일요서울 편집국장)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좌담회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설치된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지난 7월 13일자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사심의활동을 마감했다.

위원회는 그 동안의 심의활동을 결산평가하기 위해 좌담회를 가졌다. 이 날 좌담은 처리결과와 원인분석,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보도의 실태, 위원회 운영성과 및 개선방향 등의 소주제로 나뉘어 진행됐다.

위원들은 기사심의위원회가 공정한 선거보도와 신속한 피해구제라는 설립취지를 제대로 살렸다고 자평했다. 자세한 내용을 소개한다. .... 편집자

위원장 : 오늘은 그 동안의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활동을 마감하면서 위원회 활동 전반에 대해 평가해보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2000년 4월 총선 때 처음 설치되었고 이번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두 번째로 발족되었습니다.

그 결과, 저희 심의위원회는 설치기간 동안 자체심의 46건, 시정요구 10건 등 총 5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2000년 총선 기사심의위원회가 자체심의 93건, 시정요구 4건, 반론보도청구회부 1건 등 총 98건을 처리한 것과 비교하여 볼 때 자체심의 결정건수가 줄어들었고 후보자에 의한 시정요구가 늘어났습니다.

우선 이러한 심의위원회의 활동결과와 관련하여 자체심의 건수가 줄어들고 시정요구 건수가 늘어난 원인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의 위원 : 이번 6·13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48.8%로서 역대 선거사상 최저를 기

록하였습니다. 이는 대선·총선·지방선거 중 지방선거가 국민들의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권력형 비리사건, 대통령 후보 경선, 월드컵 개최 등의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국민들의 관심이 분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언론사도 여기에 편승하여 그러한 기사들에 대한 지면할애를 충분히 반영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선거기사의 수적 감소를 가져왔고 선거에 대한 집중도를 떨어뜨려 심의위원회의 자체심의건수가 줄어든 원인에 일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경일 위원 : 이번 지방선거에서 불법과 각종 이권에 연루하여 선거사범으로 처벌된 건수가 지난 2000년 총선 때보다 5배나 많았습니다. 그에

후보자에 의한 시정요구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지방선거라서 후보자수가 많았고, 선거기사심의제도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피해구제에 적극 나선 결과라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 삼 승



관련 법규의 보완을 통해  
막대한 파급력을 지닌 인터넷 매체도  
심의대상이 되어야 하고 그 심의기관  
또한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부위원장 박 기 순

반해 자체심의 건수가 줄어든 것은 언론사의 선거기사에 대한 지면감소도 있었겠지만, 환경변화에 따른 공정성 준수도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선거관련 보도준칙을 제정하는 등의 인식변화와 자정노력이 있었고 선거보도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감시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활동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 보여집니다.

위원장 : 자체심의 건수가 줄어든 반면, 후보자에 의한 시정요구는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로는 후보자나 후보예정자의 수가 훨씬 많았고 선거기사심의제도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후보자들이 선거기사에 의한 피해에 적극적으로 저희 위원회를 이용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6·13 선거보도에 대한 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익 위원 : 지방지의 경우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중앙지에 비해 더 많은 관심과 비중을 두고 선거 기사를 다루어야 하는데 다른 이슈들로 인해 그 책임을 저버린 것 같습니다.

박기순 위원 : 전체적으로 보면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은 지방지가 월등히 많고, 여론조사 위반은 중앙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방지의 경우 지역분할적 정당정치상황과 열악한 경영구조로 인한 특정 후보와의 유착관계로, 중앙지의 경우 여론조사 보도요건과 여론조사결과 보도금지 규정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그러한 위반 사례가 많았다고 보여집니다.

김해도 위원 : 이번 선거보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상실한 기사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특정 후보나 특정당을 부각시키려는 보도, 각 정당의 지역분할을 당연한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언론사의 태도, 시리즈 기사를 가장하고 특정 후보만 인터뷰한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도 관행 속에 참신한 새 후보가 자신을 홍보할 기회를 잃고 유권자도 새로운 인물에 대한 정보를 알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언론사는 경마보도식 선거보도를 지양하고 산술적인 형평성이 아닌 건전하고 실질적인 형평성을 가지고 각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선거정보 전달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임춘웅 위원 : 그 외에도 사실 확인이 안된 사건을 기정 사실인양 보도하는 기사, 상대방의 반론을 충분히 실지 않는 기사도 시급히 고쳐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주간신문이

언론사는 경마보도식 선거보도를 지양하고  
산술적인 형평성이 아닌 건전하고 실질적인  
형평성을 가지고 각 후보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김 해도 위원

선거일 바로 전후에 특정 후보를 폄하·비방하는 기사를 게재하여 후보자의 피해회복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 정치 기사를 게재할 수 없는 특수주간신문이 선거보도를 하는 경우 등도 역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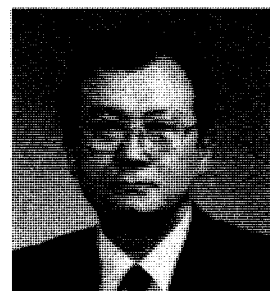
권동순 위원 : 선거보도 중 여론조사에 관한 언론사의 잘못된 관행도 고쳐져야 한다고 봅니다. 가령 이번 지방선거에서 모일간지가 유령 여론조사기관에서 조작한 여론조사결과를 사실 확인 없이 게재한 사례와 모지역 시장으로 당선된 자가 선거 전에 언론사를 돈으로 매수해 자신한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게재토록 한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 초반에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특정 후보예정자가 마치 당선되는 것처럼 보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사실보도일지라도 진실보도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후보자들의 정보가 잘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의 유명한 특정 후보와의 대결 구도를 여론조사하여 특정 후보자의 지지 기반을 굳히는 결과만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위원장 : 선거보도의 실태로서 유력한 후보자에

지방주간신문이 선거일 직전에 특정후보를 폄하·비방하는 기사를 게재하여 후보자의 피해회복을 어렵게 만들거나 특수주간신문이 발행목적에 어긋나는 정치 관련 기사를 게재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임 춘 응 위원



대한 기득권의 불가피성은 어느정도 인정해야 할 듯 합니다. 하지만 그 보도에 있어 기득권자에 대한 지나친 부각 보도는 피하고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적절한 배려도 함께 뒤따라야 할 것이며, 선거보도에 있어서는 사실확인 의무에 평상시보다 더욱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2000년 총선과 비교해볼 때 올해 지방선거는 그 운영기간이 길었으나 자체심의건수가 줄어든 것과 자체심의 중에서도 경고결정보다는 주의결정이 많았습니다. 이는 언론사가 공정한 선거보도를 위해 예전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러한 언론사의 노력은 높이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운영성과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민기 위원 : 기본적으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출범자체가 언론사의 불공정 보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었고 자체심의의 통한 언론사에 주의·경고결정을 내림으로써 공정성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켰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정요구 10건 중 기각 2건을 제외한 8건 중 6건이 보도가 되

어 신속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져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설립취지를 충분히 살렸다고 보여집니다.

그 외에도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에 재심절차를 두어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 선거사범으로 처벌된 건수는 지난 제16대 총선 때보다 5배나 많았으나 자체심의건수는 약 반으로 줄어든 것은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선거보도준칙을 제정하여 공정하게 보도하려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 일 위원



생존전략으로 선심성 기사를 남발하거나  
특정후보와 결탁하여 밀어주기식 보도를 하는  
일부 지방신문에 대해서는 보다 더 엄격한  
제재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 동 화 위원

는 경우 한 번 더 심의를 요구할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한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 참고로, 지난 2000년 총선 기사심  
의위원회에 이어 이번 지방선거 기사심의위원회  
에서도 사례가 계속 축적되었습니다. 이러한 사  
례를 유형화하여 다음 심의를 위한 참고 자료나  
guideline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여러 정당  
및 단체의 추천을 받아 오셨지만 그에 얽매이지  
않고 소신껏 자신의 주장을 펴고 서로를 존중하  
는 원만한 회의진행이 있어 그러한 성과가 나올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초기에 정한 운영방침에 따라 운영의 틀을 확립  
한 것도 나름대로 큰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  
다. 반면에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느끼는 여러 가  
지 문제점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  
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정동익 위원 : 기사심의기간  
동안 선거법이 개정되었는데,  
저희 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정기간행물 제출의무와 반론  
보도청구회부의 주체로서 정  
당이 포함된 것 밖에 없어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현재의 선거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  
째, 자체심의를 통해 언론사  
에 내리는 주의, 경고결정을  
법상 명문화해서 근거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 주의, 경고결정이 실  
효성 있는 결정이 되기 위해서는 주의, 경고 사  
실을 해당 언론사의 지면에 게재토록 하는 제도  
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  
가 미비된 현 상태에서는 광고로 결정사항을 내  
보내는 방법도 관철을 못 합니다.

셋째, 현재 시정요구 관련 조항은 후보자의 시  
정요구를 받아 이를 심의하도록 하는 규정만 있  
어, 그 결정 유형이 전무하므로 시정요구에 대한  
결정 유형의 근거를 선거법에 규정해야 합니다.  
정정보도, 반론보도, 주의, 경고, 위원회 결정의  
게재 등 다양한 결정유형을 규정하여 후보자의  
시정사항을 위원회에서 적절히 조치하여 신속한  
피해구제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박기순 위원 : 현행 선거보도에 대해 방송은 선거  
방송심의위원회가 담당하고 정기간행물은 선거  
기사심의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  
대한 파급력을 가지는 인터넷 매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의기관이 없어 피해를 구제할 수단이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인터넷 매체도 심의대  
상에 포함시키도록 법규정을 보완하여 급변하는

자체심의를 통한 주의·경고결정을 선거법에  
명문화해 두고, 결정사실을 해당 언론사 지면에  
게재되도록 제도화하고, 시정요구에 대한 결정  
유형의 근거 규정을 만드는 것이 시급합니다.

정 동 익 위원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전민기 위원 : 선거법상 개정  
하거나 보완해야할 문제 외  
에 제가 심의에 참여하면서  
느꼈던 앞으로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선거기사심의기준에서 정한 공정성 및  
형평성을 형식적 시각에서 보서는 안될 것이고  
선거기사의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특정 후보  
를 부각시키거나 비방의 의도성이 없다면 문제  
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편으로 기  
준을 좀 더 세부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  
니다.

둘째, 재심을 저희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한다  
는 것은 자칫 심의의 공정성을 잃을 수 있으므  
로 다른 기관에서 하는 방안을 강구해봐야 할  
것입니다.

셋째, 시정요구심의에서 언론사가 보도약속 후  
취하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 다시 심  
의해야 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로 인해 시정요구  
인의 피해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  
다. 앞으로 이러한 재발방지를 위해 보도약속  
내용을 위원회에서 바로 결정사항으로 정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위원장 : 선거법의 개정문제에 대해서는 그에 대

선거기사심의기준에 나온 공정성·형평성 개념을  
좀 더 세부적으로 정해둘 필요가 있으며  
시정요구 심의 때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합의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결정을 동시에  
내려 그 이행을 담보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전 민 기 위원



한 개정안을 마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와 논의해  
국회에 지속적인 개정 촉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  
다. 그리고 재심을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은 효  
율성을 따져볼 때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  
령 이번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서 재심청구가 1  
건이었고 그것을 위해 재심기관을 따로 둔다는  
것은 사건에 비해 너무 많은 비용을 치루기 때  
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전망을 포함하여 기  
타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이동화 위원 : 심의를 위해서는 언론의 내적·외  
적 환경과 매체의 특수성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부 지방신문의 경우 생존  
전략으로 선심성 기사를 남발하거나 특정후보와  
결탁하여 밀어주기식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러한 불공정 보도의 위험성이 높은 신문사에 대  
해서는 보다 엄격한 제재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  
입니다.

전민기 위원 :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설립취지는  
언론기관에 권한을 행사하기 보다는 언론사에

대한 선거보도의 주의를 환  
기시키기 위해서라고 생각합  
니다. 따라서 후보자의 피해  
구제를 위해 언론사에 대한  
제재조치에 지나치게 치중하  
기 보다는 언론사의 자율성  
을 존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선거초반 여론조사결과 보도시  
특정 후보예정자의 당선을 유력시하는 보도는  
일부 후보자는 배제된 가운데 기존 특정  
후보자들간의 대결구도를 여론조사한 결과이므로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권 동 순 위원



이동화 위원 : 저희가 처리한 안건 중에 정당의 경선 보도에 관한 기사도 있었습니다. 정당의 공천을 받기 위한 당내 경선은 하나의 정당행사인데, 당내 경선에 관한 기사를 선거기사로 보아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안건으로 채택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권동순 위원 : 당내 경선도 형식상 국민이 참여하게 되어 있고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넓은 의미에서 선거보도로 볼 수 있으므로 저희 위원회에서 당연히 처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 :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이제 어느정도 체제와 운영의 틀을 갖추었지만 아직도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향후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계속되면서 이러한 문제점들은 개선될 것이고, 그로 인한 위원회의 위상은 점점 높아져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참석하시어 진지하고 활발한 논의를 이끌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좌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